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남국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67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30.

발 의 자 : 김남국 · 김재원 · 김준혁
박해철 · 어기구 · 소병훈
朴芝源 · 문정복 · 박홍배
이주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·광고 제한 및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,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확인이나 개인맞춤형추천의 이용 제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.

그런데 개인맞춤형추천은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, 청소년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할 때 알지 못하는 이용자가 직접 연락하는 경우에는 쉽게 범죄 노출로 이어질 수 있음.

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개인맞춤형추천의 개념을 정의하고,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며, 14세 미만의 아동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고, 그 아동에게 개인맞춤형추천을 제공하는 경우 일

일 한도를 두어 한도에 도달하면 그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며, 청소년에게는 수신을 허용하지 아니한 이용자의 개별 연락 기능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2조 및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 신설 등)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“사회관계망서비스”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간 관계를 형성·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용자가 생성·게시한 정보를 다수의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·유통하며, 이를 매개로 이용자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. 다만, 특정 이용자 간의 사적 통신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는 제외한다.

15. “개인맞춤형추천”이란 이용자의 정보 또는 열람·시청·검색·반응 등 이용행태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용자별로 정보의 내용·순서 또는 노출 여부를 달리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
16. “아동”이란 14세 미만의 이용자를 말한다.

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2조의4(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및 동의 확인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용자

수, 매출액, 서비스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대상사업자”라 한다)는 자신이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대상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아동이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친권자,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연령 확인의 방법·절차,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의 방법·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2조의5(아동에 대한 개인맞춤형추천의 제한) ① 대상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아동에게 개인맞춤형추천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개인맞춤형추천에 따른 정보 열람·시청 시간이 아동의 연령 및 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일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대상사업자는 아동이 제1항에 따른 일일 한도에 도달한 경우 별도의 조작 없이 개인맞춤형추천의 제공을 중단하고, 개인맞춤형추천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대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개인맞춤형추천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실과 같은 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주요 내용을 해당 아동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일일 한도의 산정방법,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방식 및 제3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2조의6(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) ① 대상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수신을 허용한 이용자 외의 이용자로부터 다른 이용자가 열람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송되는 정보를 수신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기능을 제한하여야 한다.

② 대상사업자는 청소년이 제1항에 따른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능의 범위와 제2항에 따른 해제의 방법·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4조의8 중 “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”를 “제공자는”으로 한다.

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2항에 제5호의3부터 제5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3.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

5의4. 제4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일일 한도를 초과하여 개인맞춤형 추천을 제공한 자

5의5. 제4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능을 제한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3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① ----- -----. 1. ~ 13. (현행과 같음) 14. “ <u>사회관계망서비스</u> ”란 정보 <u>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간</u> <u>관계를 형성·유지할 수 있도</u> <u>록 하고, 이용자가 생성·게</u> <u>시한 정보를 다수의 다른 이</u> <u>용자에게 공개·유통하며, 이</u> <u>를 매개로 이용자 간 상호작</u> <u>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</u> <u>주된 기능으로 하는 정보통신</u> <u>서비스를 말한다. 다만, 특정</u> <u>이용자 간의 사적 통신을 주</u> <u>된 기능으로 하는 정보통신서</u> <u>비스는 제외한다.</u> 15. “ <u>개인맞춤형추천</u> ”이란 이용 <u>자의 정보 또는 열람·시청·</u> <u>검색·반응 등 이용행태를 자</u> <u>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하여 그</u> <u>결과에 따라 이용자별로 정보</u> <u>의 내용·순서 또는 노출 여</u> <u>부를 달리하여 제공하는 것을</u>
<u><신 설></u>	

<신 설>

② (생 략)

<신 설>

말한다.

16. “아동”이란 14세 미만의 이
용자를 말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2조의4(사회관계망서비스 이
용자의 연령 및 동의 확인) ①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
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로서 이용자 수, 매출액, 서비
스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
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
하는 자(이하 “대상사업자”라
한다)는 자신이 제공하는 사회
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연령을
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
를 하여야 한다.

② 대상사업자는 자신이 제공
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아동
이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
친권자,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
의 동의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연령 확인의
방법·절차, 제2항에 따른 법정
대리인 동의 확인의 방법·절
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42조의5(아동에 대한 개인맞춤형추천의 제한) ① 대상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아동에게 개인맞춤형추천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개인맞춤형추천에 따른 정보 열람·시청시간이 아동의 연령 및 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일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대상사업자는 아동이 제1항에 따른 일일 한도에 도달한 경우 별도의 조작 없이 개인맞춤형추천의 제공을 중단하고, 개인맞춤형추천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대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개인맞춤형추천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실과 같은 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주요 내용을 해당 아동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일일 한도의

<신 설>

산정방법, 제2항에 따른 정보
제공방식 및 제3항에 따른 고
지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2조의6(청소년에 대한 보호조

치) ① 대상사업자는 자신이
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
서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
1호에 따른 청소년이 수신을
허용한 이용자 외의 이용자로
부터 다른 이용자가 열람할 수
없는 방식으로 전송되는 정보
를 수신하지 아니하도록 관련
기능을 제한하여야 한다.

② 대상사업자는 청소년이 제1
항에 따른 제한을 해제할 수
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.
다만,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
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
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제한의 대상
이 되는 기능의 범위와 제2항
에 따른 해제의 방법·절차 및
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령으로 정한다.

제44조의8(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

제44조의8(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

에서의 아동 보호)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·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제76조(과태료) ①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5의2. (생략)

<신설>

에서의 아동 보호) -----

-----제공자는-----

-----.

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제7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~ 5의2. (현행과 같음)

5의3.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

<u><신 설></u>	<u>5의4. 제42조의5제1항을 위반하</u> <u>여 일일 한도를 초과하여 개</u> <u>인맞춤형추천을 제공한 자</u>
<u><신 설></u>	<u>5의5. 제42조의6제1항을 위반하</u> <u>여 관련 기능을 제한하지 아</u> <u>니한 자</u>
6. ~ 12. (생 략)	6. ~ 12. (현행과 같음)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